

#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서명	페이지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1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2013. 9. 2)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 전문위원 명 금 길 ]**

## **1. 안 건 명**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3년 8월 22일

나.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 **3. 의안 회부일자**

가. 2013년 8월 27일

나. 의안번호 : 13-68

## **4.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 제24조 (정원의 관리)부터 제30조 (정원의 규정)까지

[검토보고]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과 관련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임.

### < 주요내용 >

- (1) 안 제3조 관련 별표 2에서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7급 으로의 전환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일부를 현행 7급 31% 이내를 32% 이내로 1%로 증가시키고 8급 31% 이내를 30% 이내로 1% 감소 개정함.

일반직공무원	현행		개정안	
	7급	8급	7급	8급
비율	(31)% 이내	(31)% 이내	(32)% 이내	(30)% 이내

- (2) 이에 따라 안 제4조 관련 별표 3에서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과 관련하여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일부를 현행 일반직 1,023명을 1,031명으로 8명을 증가시키고 기능직 현행 235명을 227명으로 8명을 감소 개정함.

구분	현행		개정안	
	일반직 계	기능직 계	일반직 계	기능직 계
총계	1,023명	235명	1,031명	227명

### [검토의견]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 지침(안전행정부 예규)」이 개정(‘13. 3.25.)됨에 따라, 전환시험 실시 이후 최종 합격자수를 정원에 반영토록 지침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도 저촉됨이 없고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절차상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